

부천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4. 11. 21.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4. 11. 21.

라. 상정일자 : 1994. 12. 15(제7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시민과장 이광양)

가. 제안이유

○ 정부방침에 의거 '94.10.1부터 통합공과금 제도가 분리 시행됨에 따라 내부부의 통합공과금 분리 세부추진지침 ('94.7.29)이 시달되고 한전, KBS에서 통합 공과금 부과, 징수에 관한 계약해지 통보가 접수됨에 따라 통합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의 실효성이 없게 되므로서 기 징수반 부담금의 정산을 종료한 후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함.

나. 주요관자

○ 동 조례 폐지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• 통합공과금 총직원이 몇 명인지	• 총 168명 중 한전으로 45명, 수도과 34명 각 동 33명, 토직 8명, 대기자 48명임 • 대기자 근무지 지정현황은 시 7명, 구청 28명, 동 13명으로 지정하였음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

6. 소수 의견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8. 체계적 심사내용

○ 없 음

부천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

의안번호	317
의 결 년 월 일	94. 12. 21 (제33회)

제출년월일 : 1994. 11. 21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☐ 폐지이유

○ 정부방침에 의거 '94. 10. 1부터 통합공과금 제도가 분리 시행됨에 따라 내부부의 통합공과금

분리 세부추진지침('94.7.29)이 시달되고 한전, KBS에서 통합공과금 부과·징수에 관한 계약해지 통보가 접수됨에 따라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의 실효성이 없게 되므로써 기 징수한 부담금의 정산을 종료한 후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함.

☐ 주요골자

“동'조례 폐지”

부천시 조례 제 호

부천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

부천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27일부터 적용한다.

부천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4. 11. 21.

나. 제 안 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4. 11. 21.

라. 상정일자 : 1994. 12. 15. (제7차 총무위원회)